

#### [서식 예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(이중등록부 정정 목적)

# 소 장

원 고 ㅇ ㅇ ㅇ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 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 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피 고 1. 김 △ △

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(우편번호) 전화 000 - 0000

 $2. \circ ] \triangle \triangle$ 

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(우편번호) 전화 000 - 0000

##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 김△△와 피고 이△△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

### 청 구 원 인

#### 1. 피고 이△△의 출생 등

- 가. 피고 이△△은 19○○. ○. ○.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에서 父 박□□와 母 정□□ 사이의 4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, 본적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, 호주 박□□의 호적에 박□□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습니다.
- 나. 그런데 한국전쟁 때 피고 이△△은 부모와 네명의 오빠를 모두 잃어 현재 피고 이△△의 혈육으로는 원고만 남게 되었습니다.
- 다. 이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지 OO도 O O군 OO면 OO리 OO,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되었습니다.

#### 2. 이중등록부의 기재경위

- 가. 피고 이△△은 한국전쟁 때인 12세 무렵 졸지에 고아가 되어 서울에 올라가 식모생활을 하면서 본건 등록부 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망 이□□, 피고 김△△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.
- 나. 위 이□□, 김△△ 부부는 19○○. ○. ○. 위 박□□의 이름을 피고 이△△으로 정하여 자신의 딸로 호적에 입적시키게 되었고 피고 이△△의 출생일은 19○○. ○. ○.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. 그 후 위 이□□은 19○○. ○. ○. 사망하였습니다.
- 다. 이 호적 또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등록기준지 ○○시 ○구 ○○동 ○○번지,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되었습니다.
- 라. 결국 피고 이△△은 박□□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망 박□□과 망 정□□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편 이△△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망 이□□, 피고 김△△의 자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#### 3. 결론

이에 피고 이△△의 언니로서 이해관계인인 원고는(대법원 80円60 전원합의체판결, 90円347 판결), 피고 이△△의 이중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 김△△및 피고 이△△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



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, 3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친생부의 신고)

1. 갑 제2호증의 1, 2, 3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피고의 신고)

1. 갑 제3호증 인우보증서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

1. 갑 제4호증 원고, 피고들 각 주민등록초본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2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(인)

## ○ ○ 가정법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민법 제865조, 가사소송법 제26 ~ 28조
제기권자	<ul> <li>・부(夫) 또는 처(妻)</li> <li>・부(夫) 또는 처(妻)의 후견인,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</li> <li>・처(妻)의 전부(前夫)</li> <li>・자(子),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</li> <li>・이해관계인</li> </ul>		
상 대 방	·부 또는 모 ·자(子) ·검사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・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・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친생자관계 존부사유	1. 법원에 의한 부(父)의 결정(민법 제845조) 2. 자(子)의 친생부인(민법 제846, 848, 850, 851조) 3. 인지에 대한 이의(민법 제862조) 4. 인지청구(민법 제863조)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		

## ※ 제 출 법 원

- 1. 상대방(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)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- 2.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